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37
----------	-------

발의연월일 : 2025. 11. 18.

발 의 자 : 위성곤 · 유동수 · 최혁진
박홍근 · 노종면 · 권향엽
김 윤 · 박해철 · 김문수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자의 월령 2개월 미만 개 · 고양이의 판매 · 알선 · 중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월령 2개월 미만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불법으로 거래되는 실정임.

더욱이 경매장들은 번식 배경과 월령을 세탁하여 불법번식장의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학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공장식 대량생산과 선택받지 못한 동물에 대한 도살 · 폐기 · 식용전환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음.

2023년 기준 전국 18개 경매장 중 한 곳에서만도 월평균 2,500마리의 개 · 고양이가 거래되고 있는데, 경매되지 못하고 번식 · 폐기되는 개체 수를 고려하면 반려동물의 수명을 15년간으로 가정했을 때, 이는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두 세 마리씩 키운다고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더욱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만도 11만 3천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등 경매 방식 거래에 기댄 불법 대량번식은 동물복지 퇴보는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어 경매 방식 거래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매 방식 또는 투기 목적의 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판매의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경매에 편승한 공장식 대량번식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및 제4항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4호 중 “번식, 반입·반출”을 “번식(출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반출, 폐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기목적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13. 반려동물을 경매하지 아니할 것

제78조제4항제1호 중 “월령이 2개월 미만인”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을 “전달(판매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수입업자: 월령 6개월

나. 동물생산업자: 월령 2개월

3.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를 만나 직접 전달할 것

4.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하지 아니할 것

제97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78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위반하여 투기목적으로 거래하

거나 반려동물을 경매한 영업자

제97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각 구분에 따른 월령 미만인 개·

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제97조제5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제78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경매를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영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의 <u>번식, 반입·반출</u>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4. ---- <u>번식(출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반출, 폐기</u> -----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투기목적거래를 하지</u> <u>아니할 것</u>
<u><신 설></u>	<u>13. 반려동물을 경매하지 아니</u> <u>할 것</u>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 ----- ----- -----.
1. <u>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u>	1. <u>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u> <u>기간이 지나지 않은</u> -----

개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할
것

<신 설>

<신 설>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
할 것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제97조(벌칙)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10. (생 략)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가.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

수입업자: 월령 6개월

나. 동물생산업자: 월령 2개월

2. ----- 전달(판매는 제외한
다)하는 -----

3.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
자를 만나 직접 전달할 것

4. 경매를 통한 거래를 알선 또
는 중개하지 아니할 것

⑤·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78조제1항제12호 및 제1
3호를 위반하여 투기목적으
로 거래하거나 반려동물을
경매한 영업자

④ -----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u><신설></u>	----- -----. 1. ~ 8. (현행과 같음) 9.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각 구분에 따른 월령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78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판매(알선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한 영업자	⑤ ----- -----.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78조제4항제4호를 위반하여 경매를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영업자
12. (생략) ⑥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